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1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불성실 가격신고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박성훈의원안)	3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0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3. 18.
- (3) 회 부 일 : 2025. 3.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행해야 하며, 세관장은 적합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음. 또한,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실제 주체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허위·미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의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6조제2

항 제6호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불성실 가격신고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박성훈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허위신고죄 등(§276) ○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 없이 수행한 자 - 세관장 중지조치·폐쇄명령 위반해 수행한자 -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상물품 전부·일부 반입하지 아니한 자 등 <u><신 설></u> ○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과실일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과실일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 벌금	☐ 불성실 가격신고 벌금규정 마련 ○ (현행과 같음) - <u>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과태료(§277조) ○ 1억원 이하 과태료 ○ 2억원 이하 과태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과실일 경우 400만원 이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불성실 가격신고 과태료규정 마련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한 자 - 신고필증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잠정가격 신고 하지 아니한 자 - 관세 분할납부 받은 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자 등 - 장치물품 폐기명령 등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감독 등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 (현행과 같음) -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자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박성훈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19)

□ 개정안은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¹⁾ 제1항에 따라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에게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안 제276조제2항제6호 신설),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7항제8호 신설).

□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무역거래내용과 과세가격의 결정내용을 밝히는 것임.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무역거래 및 거래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각종 비용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조정하여 결정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거래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²⁾. 이에 「관세법」 제27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취지로 가격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허위·미신고 및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처벌근거가 없어 제재조치가 이뤄질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가격신고와 관련된 허위·미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세액탈루·부당이득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격신고와 관련된 허위·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가

2) 김태인·정재완, 『관세법』 (2024년 개정판), 청람, 2024, pp. 297-8.

현행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에서는 수입신고 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³⁾⁴⁾.

다만, 법 제270조의 관세포탈죄와 제270조의2는 세액에 영향을 미

3)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다.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4) 「관세법」 제270조의2 규정은 2013년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1항에 규정된 내용에 징역형을 추가한 것임. 당초 법 제276조제1항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해 여러 유형의 지능적 경제범죄가 파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의 억제효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법 제270조의2를 신설하면서 징역형도 규정함.

치기 위해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함이거나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인식과 의욕, 즉 목적의식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세액탈루·부당이득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허위·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정안의 입법목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관세법령에서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가격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과세가격결정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어떤 사유로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이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소관 부처의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

2024년의 경우 가격신고 건수 약 488만 건 중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건수는 0.2% 수준인 1.1만건에 불과함.

[가격 신고 시 과세자료 제출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가격신고서(A)	4,887,183	4,710,484	4,879,395
과세자료 첨부(B)	8,314	8,035	11,016
비율(B/A)	0.17	0.17	0.23

자료 : 기획재정부

그런데 가격미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를 살펴보면 동일거래 반복 수입 시 제출 간소화⁵⁾, 영세업체 부담 완화⁶⁾ 등으로,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신고 및 자료제출이 저조한 측면도 있음. 그럼에도 가격미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이 관세법령에 따른 것인지 제출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인 것인지에 대한 소관부처의 현황파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6)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⑥ 영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2. AEO공인(수입부문)업체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신고하는 경우(전년도 납세실적이 없는 업체 포함)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전전년도 납세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만일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가격미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구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음.

□ 이 외에도, 현행법상 가격신고의 내용이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이 마련된다면 부지의 법 위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관세는 신고납부 징수체계인데, 가격신고와 같은 납세협력 의무는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⁷⁾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⁸⁾.

문 의 처

02)6788-5158

7)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8) 현재도 관세 세액심사를 통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60%를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고, 내국세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임.